

의안번호	제 245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옥규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9년 8월 13일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옥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8월 13일

발 의 자 : 이옥규, 전원표, 허창원,
송미애, 연철흙, 정상교
하유정

1. 개정이유

-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단원과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, 퇴직시기를 정년이 1월에서 6월인 경우 6월 30일로, 7월에서 12월인 경우 12월 31일로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정년(안 제9조제3항)
 - 정년을 60세로 함
- 퇴직시기(안 제9조제4항)
 - 정년이 1월에서 6월인 경우 6월 30일
 - 정년이 7월에서 12월인 경우 12월 31일
-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(안 제11조제8항)
 - 문화예술과장 → 문화예술산업과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관계없음.

라. 입법예고 : 관계없음.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목을 “위촉기간 및 정년”으로 하고,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단원과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단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제11조제8항의 “문화예술과장”을 “문화예술산업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위촉기간 및 연령) ① 단원과 직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.</p> <p>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과 직원은 규칙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③ 위촉연령은 만 58세 이하로 한다.</p>	<p>제9조(위촉기간 및 정년) ① 단원과 직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.</p> <p>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과 직원은 규칙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③ 단원과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단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</p>
<p>제11조(운영자문위원회) ①~⑦ (생략)</p> <p>⑧ 운영자문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<u>문화예술과장</u>이 된다.</p>	<p>제11조(운영자문위원회) ①~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운영자문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<u>문화예술산업과장</u>이 된다.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

제19조(정년)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